

의안번호	2200574
의 퇴 인	송재봉 의원
회 답 일	2024. 7. 5.
추 계 번호	24B0977

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3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	국가는 대형가속기 구축사업 및 대형가속기 지원사업(이하 “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사업”이라 한다)이 세계적으로 우수한 연구인력과 연구기관·대학 및 기업 등을 유치하고 기초연구성과를 창출 및 확산시키는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함(제1항) 국가는 대형가속기를 이용한 관련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회적 현안이나 국가안보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대형가속기 관련 기술 확보 등에 노력하여야 함(제2항) 지방자치단체는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이 법에 따른 각종 조치에 협조하여야 함(제3항)	의무규정
2	안 제5조(출연)	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원활한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사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대형가속기 운영기관등에 출연할 수 있음	재량규정
3	안 제6조(전문인력의 양성 등)	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형가속기와 관련한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 등을 가진 인력(이하 “전문인력”이라 한다)의 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·추진하여야 함(제1항)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사업과 관련한 대학·연구소·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(제3항)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교육 및 훈련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음(제4항)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요건·절차·취소, 지원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(제5항)	의무규정 재량규정
4	안 제7조(기반시설에 대한 지원)	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원활한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사업을 위하여 도로, 용수, 전력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	재량규정
5	안 제8조(임대료 등 지원)	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형가속기 운영기관등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나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그 임대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음	재량규정
6	안 제9조(부대시설 설치 등 지원)	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사업 관련 시설 및 부지에 숙소, 편의시설, 보육시설, 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음(제1항)	재량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7	안 제10조(국제교류 등의 사업과 지원)	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사업과 관련한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및 관련 연구기관의 국제교류와 산학연 국제 공동연구 수행 등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	재량규정
8	안 제11조(국유·공유재산의 사용·수익·대부 및 매각 등의 특례)	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「국유재산법」·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국유·공유재산을 수익계약에 따라 대형가속기 운영기관등에 사용·수익하게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음(제1항) 제1항에 따라 국유·공유재산을 사용·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하는 경우 그 기간은 「국유재산법」 제35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과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1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50년 이내로 할 수 있음. 이 경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,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0년을 초과할 수 없음(제2항)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사용·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하는 경우에는 「국유재산법」 제18조제1항 및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 위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음. 이 경우 그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이 끝나는 때에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음(제3항) 제1항에 따라 사용·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하는 국유·공유재산의 사용·수익료 및 대부료의 산정기준은 「국유재산법」 제32조제1항 및 제47조와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2조 및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름(제4항) 제1항에 따라 국유·공유재산을 대형가속기 운영기관등에 매각할 때에 매입하는 자가 매입대금을 일시불로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「국유재산법」 제50조제1항 및 제2항,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3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 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음(제5항)	재량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9	안 제12조(대형가속기 관련 기관 간 협력 지원)	국가는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을 위하여 대형가속기 관련 기관 간의 교류 및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(제1항) 1. 대형가속기 관련 기관 간 효율적 운영·협력 체계 2. 대형가속기 인력·기술·정보교류 활성화 3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	의무규정
		국가는 제1항에 따른 대형가속기 관련 기관 간의 교류 및 협력 방안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(제2항)	재량규정
10	안 제13조(권한의 위임·위탁)	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음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등 근거 규정
1	안 제5조(출연)	현재 관련 사업 실시 중, 사업규모 확대 가능 － 현 시점에서 향후 확대될 지원사업의 범위·규모 등을 예측하기 어려움
2	안 제6조(전문인력의 양성 등)	
3	안 제7조(기반시설에 대한 지원)	
4	안 제9조(부대시설 설치 등 지원)	
5	안 제3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6	안 제8조(임대료 등 지원)	
7	안 제10조(국제교류 등의 사업과 지원)	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등 근거 규정
8	안 제11조(국유·공유재산의 사용·수익·대부 및 매각 등의 특례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9	안 제12조(대형가속기 관련 기관 간 협력 지원)	
10	안 제13조(권한의 위임·위탁)	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의 일부 조항은 현재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, 개정안에 따라 사업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나 현 상황에서 확대되는 사업의 내용 및 범위 등을 알 수 없으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 -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충청북도는 충청북도 청주시에 다목적 방사광가속기를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
 - － “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”¹⁾은 2021년 4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였으며, 총사업비 1조 787억원이 투입되어 2021년 7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약 6년간 추진될 예정

[표 1]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 개요 및 일정

	내 용
사업기간	2021. 7. ~ 2027. 12.(상세설계 3년, 가속장치 및 빔라인 구축 3년 등 약 6년 소요)
총사업비	1조 787억원(국비 8,787억원, 지방비 2,000억원)
부지/시설 규모	부지 540,000㎡(기본부지 310,000㎡ 포함) / 시설 69,400㎡

자료: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- － 정부는 방사광가속기의 가속장치, 빔라인 및 기반시설의 구축을 위하여 “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”의 2024년도 예산으로 530억원을 편성하였음

1) 현행 “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”은 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 등을 법적 근거로 하여 실시되고 있음

[표 2]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 내역: 2024년도 예산 기준

(단위: 백만원)

	내 용	2024년도 예산
가속장치 구축	· 가속장치 상세설계 및 장기제작품 초기 발주	26,000
빔라인 구축	· 빔라인 장치 상세설계 및 장기제작품 발주	4,000
기반시설 구축	·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사업 인건비·경상경비·공사비 등	23,000
합 계		53,000

자료: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

[표 3] 개정안과 현행 사업 비교

(단위: 백만원)

조·항(조제목)	현행 사업(2024년)		
	사업	개요	'24예산
안 제5조(출연)	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구축사 업 (1235 - 301)	산업적 이용 활성화 및 과학기술 기 초역량 강화를 위한 세계적 수준의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	53,000
	중입자가속기 구축지원 (1442 - 403)	중입자 가속기 시설을 도입하고, 난치성 암 치료 및 기초연구를 위한 치료센터(부산 기장)를 구축	9,980
안 제6조(전문인력의 양성 등)	중이온가속기 선행R&D(내 역) (1640 - 300)	고에너지가속장치 본제품 구축 전 필수 요소기술을 개발/검증하고 핵 심공정설비를 확충하여 기술구현 불확실성 제거	-
안 제7조(기반시설에 대한 지원)	방사광가속기 공동이용연구 지원 (1235 - 411)	포항 3,4세대 방사광가속기를 기 초과학과 응용과학 및 산업기술 분 야의 최첨단 연구에 범국가적 공동 연구시설로 활용토록 지원	67,198
	양성자가속기 운영(내역) (2241-401)	양성자 가속기를 통해 우주부품, 반도체 등 다양한 분야 연구개발에 활용	10,447
안 제9조(부대시설 설치 등 지원)	중이온가속기 운영(내역) (2231-414)	중이온가속기 기반 시설 및 가속기 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	25,893
	가속기인력양 성 및 활용지원 (내역) (1744-411)	대학원 중심의 전문 교육을 통한 석·박사 인력 양성 및 현장 연수 기 반 실무 전문가 육성 추진	3,836

자료: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

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(안 제3조)

- 제정안은 국가가 대형가속기 구축사업 및 대형가속기 지원사업과 관련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·시행하고 관련 기술 확보 등에 노력하며,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에 따른 각종 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, 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인 책무를 선언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□ 임대료 등 지원(안 제8조) 및 국유·공유재산의 사용·수익·대부 및 매각 등의 특례(안 제11조)

- 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형가속기 운영기관등으로 하여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나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그 임대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, 대형가속기 운영기관등에 국유·공유재산을 사용·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하는 경우 그 기간을 50년 이내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특례를 규정하여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 수입 등의 감소를 가져올 수 있으나, 현 시점에서는 구체적인 감면 계획 등을 알 수 없어 임대 수입 감소분 등을 추계할 수 없음
-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, 현재 운영 중인 포항 3,4세대 방사광가속기·양성자가속기·중이온가속기의 경우 다른 법률 규정을 근거로 토지를 무상사용·대부 중임
 - 포항 3,4세대 방사광가속기: 현재 민간기관(포항공대)과 협약을 통해 무상으로 지상권을 확보하여 대형가속기 운영기관이 시설(국유재산) 운영
 - 양성자가속기: 「중·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근거 무상대부
 - 중이온가속기: 「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근거 무상대부

□ 국제교류 등의 사업과 지원(안 제10조)

- 제정안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사업과 관련

한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교류와 국제 공동연구 수행 등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현 시점에서는 신규 국제교류 및 국제 공동연구 추진계획을 알 수 없어 이와 관련한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음

□ 대형가속기 관련 기관 간 협력 지원(안 제12조)

- 제정안에 따라 국가가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을 위하여 대형가속기 관련 기관 간의 교류 및 협력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,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경우 국가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현 시점에서 기관교류 및 협력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음

□ 권한의 위임·위탁(안 제13조)

- 제정안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할 경우 업무위탁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, 업무위탁의 범위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는 위탁 대상 기관 및 위탁 업무 내용 등을 알 수 없음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I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박인재	이유미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박인재	02-6788-4650	powerreset@nabo.go.kr